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당헌의 기재사항에 전당원대회 추가 등>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43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당헌의 기재사항에 전당원대회 추가 등	3
2.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확대 등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을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0. 30.
3. 회 부 일 : 2024.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당헌에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 당원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전당원대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또한,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각 100명으로 제한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 강화와 지방분권화 시대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헌에 전당원대회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고,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의원총회는 전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28조제2항제4호의 2 및 제29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중앙당과 시·도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총수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각 시·도당에 정책연구소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당헌의 기재사항에 전당원대회 추가 등

개정안은 당헌의 기재사항에 “전당원대회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를 추가하고, 정당의 기구로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의원총회는 전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illegible]

현행법은 정당이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당헌의 기재사항으로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제5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당헌의 기재사항 》

구 분	내 용
제1호	정당의 명칭
제2호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제3호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제4호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제5호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제6호	간부회의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
제7호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제8호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제9호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10호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제11호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1)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2)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3)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및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강령·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4) **제29조(정당의 기구)** ② 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관의 조직·권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 당원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전당원대회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통상 전당원대회(전당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원⁵⁾들이 참가해 개최하는 회의로서 각 정당의 주요 지도부의 선출, 대통령 후보자의 결정, 기타 당의 진로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⁶⁾

이에 개정안은 당헌의 기재사항에 “전당원대회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를 추가하고, 정당의 기구로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의원총회⁷⁾는 전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전당원대회의 중요성과 그 지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전당원대회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를 당헌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여 그 개념을 정당의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당원대회 역시 대의기관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의기관과 별개로 전당원대회를 당헌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⁹⁾

5) 규모가 작은 정당의 경우 전당원대회의 구성을 모든 정당원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통상의 정당들은 전당원대회의 구성을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콘텐츠 중 전당대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7&bcIdx=188006>)

7) 정당의 기구는 각 정당마다 자율적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당헌에서 대의기관과 집행기관, 원내기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례를 예로 들면, 대의기관으로는 전국당원대회, 중앙위원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는 당무위원회,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처, 정책위원회가 있으며, 원내기구로 의원총회, 원내대표를 두고 있음. 국민의힘의 경우 당헌에서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을 별도로 구분해놓지 않음.

8) “대의기관”의 사전적 정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정사를 논의하는 기관을 의미함.(표준국어대사전)

또한,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의원총회가 전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강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과 법률¹⁰⁾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헌법재판소는 정당 관련 헌법과 법률의 규정과 정당의 중요성을 참작하여 볼 때, “입법자는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정당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당원대회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를 당헌에 기재하도록 정할지 여부와 정당의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의원총회가 전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9)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에서는 전국당원대회를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기관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전국당원대회

제15조(지위와 구성) ①전국당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당헌에서 대의기관이라고 지칭하고 있진 않으나, 전당대회를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국민의힘 당헌」 제3장 당기구, 제1절 전당대회

제12조(구성) ①전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10,000인 이내로 하고,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각호 생략)

기타 다른 정당의 당헌은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nec.go.kr/site/nec/politicalParty/doctrineConstitutionView.do?searchOption1=1&searchOption2=10&searchOption3=%EA%B8%B0%EB%B3%B8%EC%86%8C%EB%93%9D%EB%8B%B9&searchCondition=1&searchKeyword=&cbIdx=256&bcIdx=234773>)

10)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재판소 2022.11.24. 선고 2019헌마445 판례 》

헌법 제8조에 의해 보장되는 정당제도에 있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정당법 제2조).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정치적 도관(導管)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체적·능동적으로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유도·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담당자이며 매개자이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정당의 이러한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여,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로부터 분리하여 제8조 제1항에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정당설립의 자유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 누구나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아울러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것의 당연한 법적 산물인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 관련 헌법과 법률의 규정과 정당의 중요성을 참작하여 볼 때, 한편으로 입법자는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정당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등 참조).

개정안은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를 현행 “중앙당 100명과 시·도당 총 100인 이내”에서 “중앙당 150명과 시·도당 총 150인 이내”로 확대하고, 정책연구소의 설치 범위를 현행 “중앙당” 외에 “시·도”까지 분원의 형태로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11)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

현행법은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를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하면서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은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법 제30조제4항)하여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원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정치자금법」 제27조¹²⁾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

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정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에서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상근·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봉급·수당·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청소, 이사 등 일시적으로 단순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15일 이상 매 30일까지마다 1명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2.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

12)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 정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② 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③ ~ ⑤ (생략)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정책연구소는 2004년 법 개정¹³⁾을 통해 설치되었으며 보조금 배분 대상정당에 한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하여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¹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3개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는데, 정책연구소는 연간 활동실적을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고 있음.¹⁵⁾

13) 법률 제7190호 정당법(2004.3.12. 일부개정). 2004년 법 개정으로 지구당 폐지, 중앙당의 경량화,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소 의무화 등의 내용이 도입됨.

14) 「정치가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생략)

15) 「정당법」 제35조(정기보고) ③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은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227557>)

《 정책연구소 현황 》

정당명	이사장	정책연구소	연구소장	법인등록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연구원	이한주	2008.09.04.
국민의힘	권영세	여의도연구원	윤희숙	2004.11.26.
조국혁신당	김선민	혁신정책연구원	서왕진	2024.06.11.
개혁신당	허은아	개혁연구원	이준석	2023.11.15.
진보당	김재연	진보정책연구원	신석진	2018.01.12.
기본소득당	용혜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오준호	2020.10.27.
사회민주당	천호선	불평등연구소	천호선	2024.11.21.
민생당	서진희	혁신과미래연구원	오세문	2018.10.30.
	이수봉	민주평화연구원	공석	2018.03.15.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새미래연구원	김성주	2024.06.25.
우리공화당	조원진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이주천	2018.12.11.
자유통일당	김종대	광화문연구원	공석	2024.12.24.
정의당	조돈문	정의정책연구소	장석준	2012.12.11.

※ 참고: 민생당의 정책연구소가 2개인 이유는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과 합당되어 민생당이 된 후에도 민주평화당의 정책연구소(민주평화연구원)와 바른미래당의 정책연구소(혁신과미래연구원)가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s://www.nec.go.kr/site/nec/ex/bbs/List.do?cbldx=1241>)

그런데, 중앙당이 아닌 시·도당의 경우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당 정책연구소의 분원 혹은 시·도당의 내부조직 형태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¹⁶⁾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시·도당과 유급사무직원 수를 공유하고 있고, 예산 또한 시·도당과 나누어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시·도당 단위에서 지역

16) 국민의힘 당규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명칭 및 소재지) ① 이 규정이 규율하는 정책연구소의 명칭은 여의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연구원의 주사무소는 수도에 두며,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분원을 둘 수 있다.

시도당 정책연구소 관련 언론보도: NSP통신(2017.9.5.), “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민주연구소 창립식 개최”

의 특성을 반영한 내실있는 정책 개발·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¹⁷⁾

이에 개정안은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를 현행 “중앙당 100명과 시·도당 총 100인 이내”에서 “중앙당 150명과 시·도당 총 150인 이내”로 확대하고, 정책연구소의 설치 범위를 현행 “중앙당” 외에 “시·도”까지 분원의 형태로 허용하여 시·도당 정책연구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정당 유급사무직원 수의 변화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중앙당	○ 최대 100명 (중앙당 정책연구소 인원 제외)	○ 최대 150명 (중앙당 정책연구소 인원 제외)
시·도당 (§30④)	○ 총 100명 이내 (시·도당 정책연구소는 법률상 기구가 아니므로 인원 포함)	○ 총 150명 이내 (시·도당 정책연구소도 법률상 기구로 인원 제외)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 제28조제2항), 개정안과 같이 시·도당 정책연구소를 법률상 기구로 인정하게 되면 해당 보조금을 시·도당의 정책연구소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7) 문화매일(2021.6.7.),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치...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의 길”

제21대국회에서도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0723호)

다만, 현행법상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은 유급사무직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법 제30조제4항), 시·도당 정책연구소를 법률상 기구로 인정하게 되면 유급사무직원 제한과는 무관히 연구원 숫자를 늘릴 수 있는데 정당 유급사무직원 수까지 확대하는 경우 정당의 전체적인 규모가 비대해지고¹⁸⁾ 정당 간 격차가 심화¹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시·도당 정책연구소의 도입과 유급사무직원 수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지역별 정책 개발·연구의 필요성과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 정책연구소의 도입 및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 상향에 대해서는 정당의 조직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 우리나라의 정치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시·도당 정책연구소의 도입과 유급사무직원 수의 규모를 늘리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101호,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과

18) 개정안에 따르면 유급사무직원 수가 최대 1.5배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유급사무직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시도당 정책연구소의 인원까지 포함하면 유급사무직원 수의 규모는 1.5배를 초과할 수 있음. 각 정당의 평균 유급사무직원수 현황(2019년~2023년)은 참고자료 참조.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정당 정책연구소는 민주연구원(59명), 여의도연구원(58명), 혁신과미래연구원(5명), 진보정책연구원(2명), 정의정책연구소(1명) 순으로 연구인력 이외에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음. 202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2023.11.17.) p.21.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유사 개정안과의 비교 》

현 행	장경태의원안 (의안번호 제2202101호)	정을호의원안 (의안번호 제2205043호)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u>100명</u>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u>100인</u>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 ① ----- ----- ----- <u>200명</u> ----- ----- ----- <u>200인</u> ----- ----- -----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 ① ----- ----- ----- <u>150명</u> ----- ----- ----- <u>150인</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 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u>정책연구소</u> (이하 “ <u>정책연구소</u> ”라 한다)를 설치· <u>운영</u> 하여야 한다.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 ----- ----- ----- ----- ----- ----- ----- <u>정책연</u> <u>구소</u> ----- ----- -----.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 ----- ----- ----- ----- ----- ----- ----- ----- <u>운영</u> 하여 야 하며, 각 시·도당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② 정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u>정책연구소</u>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u>정책연구소</u> 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정책연구소</u> (이하 “ <u>정책연구소</u> ”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아울러, 「정치자금법」 제28조는 중앙당 정책연구소를 전제로 경
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
을 시·도당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한
다면 「정치자금법」에 따른 경상보조금의 배분비율이나 세부적인
분배방안을 개정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현행 경상보조금 의무배분 대상 및 비율》

대 상	비 율
정책연구소	30% 이상
시·도당	10% 이상
여성정치발전	10% 이상
청년정치발전	5% 이상
계	55% 이상

문 의 처

02)6788-5332

참 고

각 정당의 평균 유급사무직원수 현황

(단위:명)

정당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앙당	사·도당	중앙당	사·도당	중앙당	사·도당	중앙당	사·도당	중앙당	사·도당
평균 (원 내 1·2 당)	91	82	87	83	84	88	83	89	82	86
더 불 어 민 주 당	94	94	87	95	88	97	91	96	96	98
국 민 의 힘 (구. 자유한국당)	88	70	86	71	80	80	74	82	68	73
정 의 당	68	83	65	78	67	84	56	68	44	61
기 본 소 득 당	-	-	8	0	11	0	11	0	13	0
시 대 전 환	-	-	5	0	2	0	2	0	-	-
진 보 당 (구. 민중당)	35	73	30	77	35	84	36	82	0	88
한 국 의 희 망	-	-	-	-	-	-	-	-	2	0
바 른 미 래 당	56	38	-	-	-	-	-	-	-	-
국 민 의 당	-	-	9	7	11	8	-	-	-	-
열 린 민 주 당	-	-	7	1	10	3	-	-	-	-
민 주 평 화 당	17	5	-	-	-	-	-	-	-	-
가나코리아(코리아당) (구. 가자코리아)	0	0	0	0	0	0	0	0	0	0
가 락 당 (구. 거지당)	-	-	0	0	0	0	0	0	0	0
가자평화인권당(평화인권당) (구. 인권정당)	0	0	0	0	0	0	0	0	0	0
가자환경당(환경당)	-	-	0	0	0	0	0	0	0	0
공 화 당	0	0	-	-	-	-	-	-	-	-
국 가 혁 명 당	0	0	17	1	25	0	19	0	12	0
국민대통합당(통합당) (구. 국민행동당 구. 통일민주당)	0	0	0	0	0	0	0	0	0	0
국 민 주 권 당	-	-	-	-	-	-	-	-	0	0
국민참여신당(참여신당)	0	0	0	0	0	0	0	0	0	0
그 린 불 교 연 합 당	0	0	-	-	-	-	-	-	-	-
기 독 당	0	0	0	0	0	0	0	0	0	0
깨어있는시민대당(깨어신당)	-	-	0	0	0	0	0	0	0	0
남 북 통 일 당	-	-	0	0	1	0	1	0	1	0
내 일 로 미 래 로 (구. 충청의미래당)	-	-	0	0	1	0	0	0	0	0
노 동 당	4	4	3	4	3	3	3	2	3	3
노 인 복 지 당 (구. 한국복지당)	0	0	0	0	0	0	0	0	0	0
녹 색 당	9	8	7	7	6	6	6	4	7	3
대한국민당(대국당)	-	-	-	-	0	0	0	0	0	0
대 한 당	0	0	0	0	1	0	0	0	0	0
대한민국당(대민당)	0	0	0	0	0	0	0	0	0	0
더 밝 은 미 래 당	-	-	-	-	-	-	0	0	0	0
모 두 함 께	-	-	-	-	-	-	-	-	1	0
미 래 당 (구. 우리미래)	0	0	0	0	2	0	0	0	0	0
민 생 당	-	-	32	29	8	16	7	12	9	6
민중민주당(민중당)	0	0	0	0	0	0	0	0	0	0

정당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앙당	사도당	중앙당	사도당	중앙당	사도당	중앙당	사도당	중앙당	사도당
새 누 리 당	0	0	0	0	0	0	0	0	0	0
새 로 운 선 택	-	-	-	-	-	-	-	-	0	0
신 한 반 도 당 (구. 국민새정당)	0	0	0	0	0	0	0	0	0	0
신한반도평화체제당 (구. 가가도레인연합)	-	-	-	-	0	0	0	0	-	-
여성의당(여성당)	-	-	3	7	2	9	3	7	2	2
열린민주당	-	-	-	-	-	-	0	0	1	0
우리공화당	29	4	14	7	13	7	14	3	15	0
자유당	-	-	0	0	0	0	0	0	0	0
자유민주당	-	-	-	-	2	0	3	0	3	0
자유이새벽당(새벽당)	1	0	1	0	3	0	1	0	3	0
자유통일당 (구.기독자유당 구.기독자유 통일당 구.국민혁명당)	0	0	1	0	3	0	8	0	5	1
자유한국21 (구.한국경제당 구.국민희망당)	1	2	1	2	-	-	-	-	-	-
중소자영업당(자영업당)	-	-	0	0	0	0	0	0	0	0
직능자영업당	-	-	0	0	0	0	0	0	0	0
친박신당	-	-	9	0	1	0	1	0	1	0
친박연대	0	0	0	0	0	0	-	-	-	-
통일한국당	-	-	-	-	5	1	7	0	5	0
통합민주당	0	0	-	-	-	-	-	-	-	-
한국국민당(한국당)	1	0	1	0	1	0	1	0	1	0
한국농어민당	-	-	-	-	-	-	-	-	0	0
한국독립당 (구.국재신당 구.독도한국당)	0	0	0	0	0	0	0	0	0	0
한나라당	0	0	0	0	0	0	0	0	0	0
한류연합당	-	-	-	-	0	0	0	0	0	0
한반도미래연합(한미연)	0	0	0	0	0	0	-	-	-	-
한반도미래당	-	-	-	-	-	-	-	-	0	0
혁명21	-	-	-	-	1	0	1	0	1	0
홍익당	0	0	0	0	0	0	0	0	0	0

※ 참고: [-] 해당 연도에 정당 부존재

[0] 해당 연도에 유급사무직원수 0명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